

### 소송 등의 판결.결정(3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1. 김○○ 2. 임○○
3. 판결.결정내용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판결.결정사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 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1년 10월 14일
7. 확인일자	2021년 10월 1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판결원리금 전액 2020년 재무에 기반영되어 추가적 재무부담 없음.